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83
----------	------

발의연월일 : 2024. 4. 11.

발의의원 : 최재규 의원,

신동윤 의원, 김은영 의원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사항과 실제 의회 운영현황을 반영하고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의회운영과 행정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한 전문위원의 업무 명확화(안 제4조제1항)

나.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

## 3. 개정 조례안 : “붙임”

##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달성군의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속위원회”를 “사무국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의회의원”을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시정”을 “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를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로 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u> <u>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u>달성군의회</u>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u>의회사무기구</u>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u>의회</u>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의회</u>에 사무국을 둔다.</p> <p>② 사무국은 <u>의장</u>의 지휘·감독을 받아 <u>의회</u>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p> <p>제3조(사무국장) ① (생략)</p> <p>② 사무국장은 <u>의장</u>의 명을 받아 <u>의회</u>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조(전문위원) ① <u>소속위원회</u>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p>	<p><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u>의 <u>설치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u>----- ----- ----- ----- -----.</p> <p>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의 -----.</p> <p>② ----- <u>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p> <p>제3조(사무국장) ① (생략)</p> <p>② ----- -----<u>총괄</u>----- -----</p> <p>제4조(전문위원) ① <u>사무국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u>----- -----.</p>

② (생략)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생략)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 3. (생략)
-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5. (생략)
-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생략)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에 따른 -----  
-----.

제5조(정책지원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

- 1. ~ 3. (현행과 같음)
- 4. ---- 군정 -----  
-----
- 5. (현행과 같음)
- 6.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규칙)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

## □ 「지방자치법(법률)」(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

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4. 일부개정·시행)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4.1.16. 일부개정, 2024.1.18. 시행)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조례)」(2023.11.10. 전부개정, 2024.7.1. 시행)

제2조(위원회의 종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